-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○ 예산군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오남용 방지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불용의약품, 폐의약품의 용어 정의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등 지속적인 교육.홍보 추진
- 폐의약품의 배출·수집·운반 처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

○ 군민의 책무(안 제4조)

-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의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

○ 불용의약물등의 관리(안 제5조)

-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·홍보 및 분기별 1회 이상 수거·운반·처리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: **지방자치법** 제22조, **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** 제14조

❍ 기　　타

1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 : 2018. 2. 5. ~ 3. 12(8일간)
　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붙 임 1

4. 검토의견

❍ 「**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**」은 예산군 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

❍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·운반·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